

제한경쟁사유서

1. 건 명 : 5~8호선 승강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용역

2. 예산과목 : 선로설비

3. 예산금액 : 일억이천오백팔십칠만 원(₩125,870,000)

4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(계약의 방법) ②항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) ①항 8호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)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·공고한 물품을 제조·구매하는 경우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(개정 '18. 8. 18.)

5. 제한경쟁 사유

「5~8호선 승강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용역」건의 프로그램 개발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어 계약규정 제21조 1항 8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구매코자 합니다.

붙임 :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상세정보 1부

2019. 10. .

작성자 : 기계처 4급 이 영 대 

확인자 : 기계처장 2급 위 성 

붙임

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

공공구매매중합정보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

연도: 2019년 | 산업군: | 제품명: | 세부명: 811159901

전체 | 1개 (세부명검색) | 엑셀다운로드

분류 번호	제품		세부분류		산업분류 번호	특이사항
	대분류	소분류	제품명	세부명		
81	공학연구및 기술지원서비스	011115	소프트웨어연구개발업	8111159901	58221 58222 58310 62021	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5차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업금액 미만에 포함